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7.2.21(화) 16:00

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
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오성일

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황규철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7년 1월 6일

나. 회부일자 : 2017년 1월 10일

3. 제안 이유

○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2016년 6월 23일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,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지역 특성에 맞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
나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(안 제5조)

다.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(안 제6조)

라. 다양한 품목의 소량 생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영세·고령 및 여성 농업인들의 조직화(안 제7조)

마. 기업체와 생산자·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유통·서비스업체 상호간의

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 추진(안 제9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안'은 2016년 6월 상위법인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, 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 이익보호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.